NCS 정보능력

정보윤리

1. 정보윤리란?

- 정보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윤리적 잘못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 체계

-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동하는 데에 필요한 규범 체계

정보윤리의 개념

광의

- 정보의 생성, 유통, 사용까지 모두를 포함

협의

- 정보의 배포 및 전달 과정에만 관여

일반적인 정보윤리란?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건전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

※ 제작자가 아닌 사용자 중심 개념

2. 사이버예절 네티켓(netiquette)

게시판 네티켓

1.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비난의 글 삼가

2.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올리지 말 것(도배 금지)

3. 짧고 명확한 표현,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제목 사용

4. 문법에 맞는 표현과 올바른 맞춤법 사용

5. 타인이 올린 글에 대한 지나친 반박 삼가

자료실 네티켓

1. 자료실에 등록할 자료는 미리 압축
2. 자료를 올리기 전에 바이러스 체크
3. 상업용 소프트웨어는 올리지 말 것
4. 자료를 올릴 때는 등록자를 밝힐 것
5. 음란물은 실수로라도 올리지 말 것

전자우편 네티켓

1. 제목은 반드시 넣고, 내용을 함축하여 간략히 제시

2. 편지로서의 형식 준수 (특히 업무 관련 메일)
   - 받는 이, 첫인사, 본문, 마무리 인사, 보내는 이

3. 본문 내용은 요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작성

4. 상대에 대한 예의와 언행에 유의

5. 전송하기 전에 메일 주소가 올바른지 확인

웹문서 네티켓

1. 문서에 너무 용량이 큰 이미지를 넣지 말 것

2.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너무 많은 화면을 거치지 않도록 할 것

저작권 침해 문제

- P2P 사이트로 음악, 영화, 프로그램 등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임
-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권리자의 전송권 침해 행위에 해당
- 최근 저작권 침해 관련 고소 급증
-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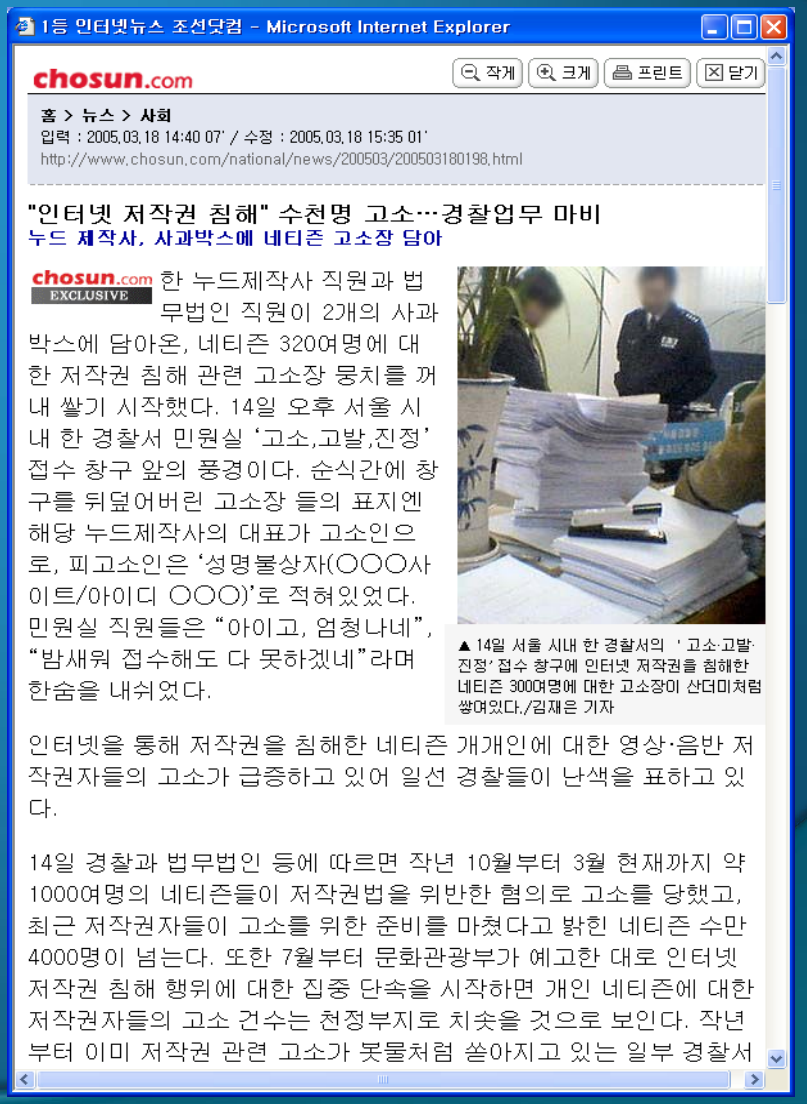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chosun.com

작게 크게 프린트 닫기

홈 > 뉴스 > 사회

입력 : 2005.03.18 14:40 07' / 수정 : 2005.03.18 15:35 01'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03/200503180198.html

"인터넷 저작권 침해" 수천명 고소…경찰업무 마비

누드 제작사, 사과박스에 네티즌 고소장 담아

chosun.com EXCLUSIVE 한 누드제작사 직원과 법무법인 직원이 2개의 사과박스에 담아온, 네티즌 320여명에 대한 저작권 침해 관련 고소장 뭉치를 꺼내 쌓기 시작했다.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경찰서 민원실 '고소,고발,진정' 접수 창구 앞의 풍경이다. 순식간에 창구를 뒤덮어버린 고소장 들의 표지엔 해당 누드제작사의 대표가 고소인으로, 피고소인은 '성명불상자(○○○사이트/아이디 ○○○)'로 적혀있었다. 민원실 직원들은 "아이고, 엄청나네", "밤새워 접수해도 다 못하겠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 14일 서울 시내 한 경찰서의 '고소·고발·진정' 접수 창구에 인터넷 저작권을 침해한 네티즌 300여명에 대한 고소장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김재은 기자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네티즌 개개인에 대한 영상·음반 저작권자들의 고소가 급증하고 있어 일선 경찰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14일 경찰과 법무법인 등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3월 현재까지 약 1000여명의 네티즌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최근 저작권자들이 고소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힌 네티즌 수만 4000명이 넘는다. 또한 7월부터 문화관광부가 예고한 대로 인터넷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하면 개인 네티즌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고소 건수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이미 저작권 관련 고소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일부 경찰서

명 예 훼 손

	형법상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 유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유포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 상대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을 쓰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유포하는 행위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성 글이나 그림, 패러디 물을 다른 곳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면 유포자도 명예훼손죄에 해당

사이버 스토킹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동통신, 이메일, 대화방, 게시판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포감,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행위

유형별 현황 (2004년)

구분	계	해킹 바이러스	인터넷 사기	개인정보 침해	불법 사이트	명예 훼손	저작권 침해	기타
발생건수 (건)	77,099	15,390	40,283	3,137	2,308	1,988	1,064	12,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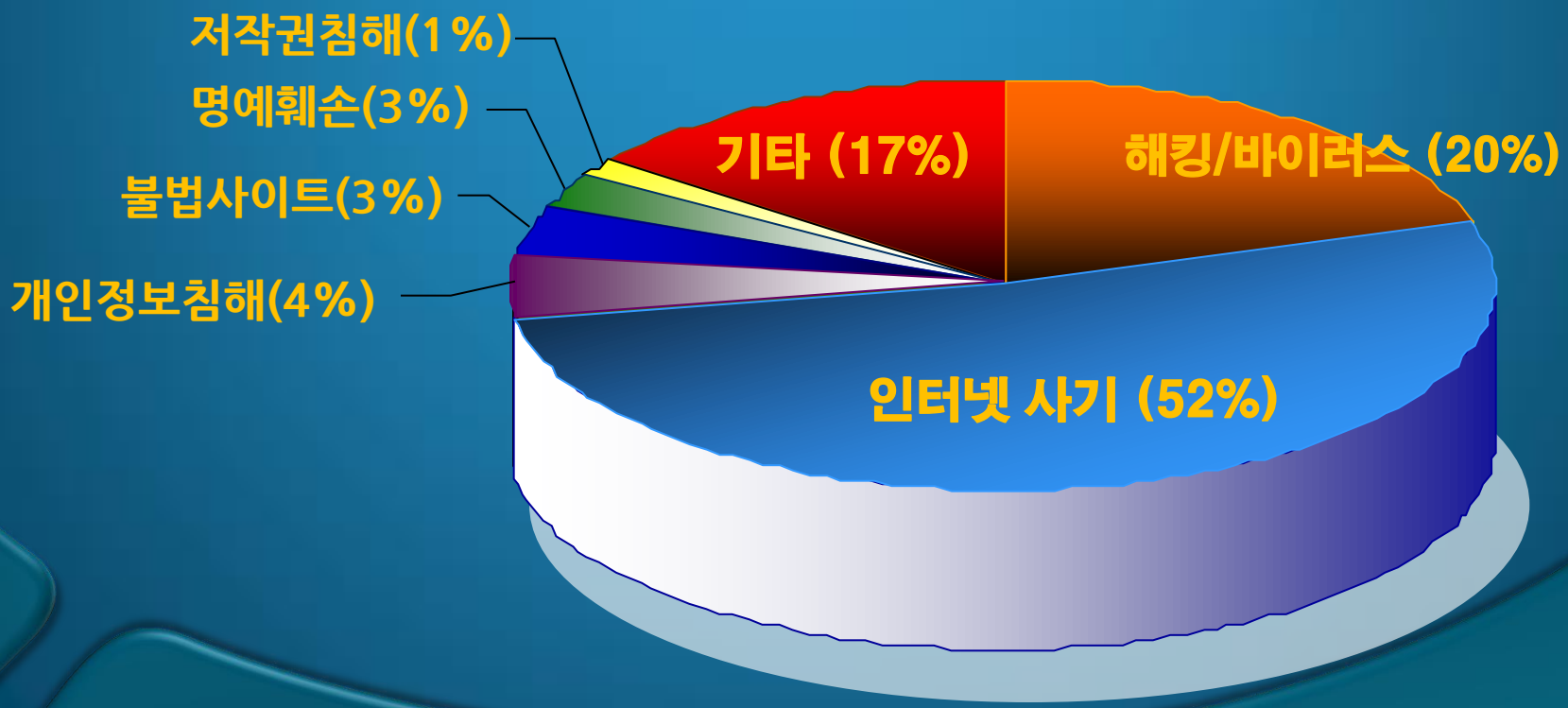

3.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법 (KISA)

사물 인터넷 해킹
(IoT : Internet of Things)

- 개념 : 전자제품, 통신기기, 자동차 등 컴퓨터로 제어되는 기기에 인터넷을 연동시켜 활용하는 기술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일반적 인터넷과 달리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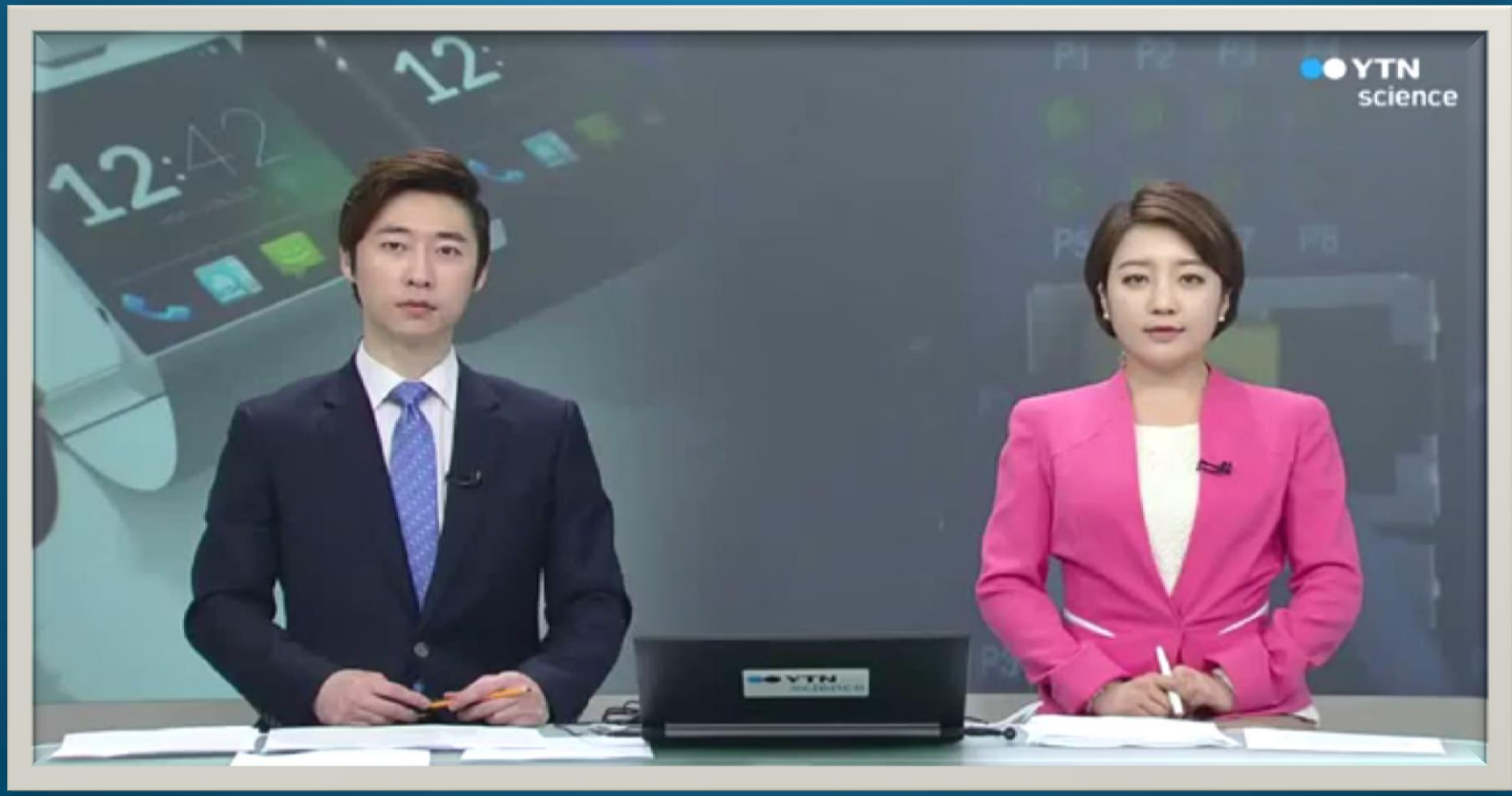
사물 인터넷 해킹
(IoT : Internet of Things)